

#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최 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1
----------	------

발의연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최 선 의원(1명)

찬 성 자 : 전병주, 김정태, 이병도,  
김기덕, 이상훈, 조상호,  
황인구, 김제리, 채유미  
의원(9명)

## 1. 제안 이유

- 최근 스쿨미투(#MeToo) 및 학교 내 여성혐오, 성차별 발언 등의 이유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2018.2.5.)’ 청원 등 학교 내 성평등 교육 강화 및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양성평등기본법」의 제14조, 제18조, 제29~31조, 제36~37조 등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 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의 성평등 환경 조성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실천함.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동등한 성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성평등 교육환경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3조).
- 나.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활성화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6~8조).
- 마. 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하여 교원대상 자격 및 직무연수 편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바. 성평등 관점의 성차별·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사.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통하여 상호협력적 성평등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3. 참고 사항

- 가. 관계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교육 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성평등 교육을 통한 교육당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및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통해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평등 교육"이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성평등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며, 성평등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3. "성평등 교육환경"이란 교육당사자가 교육을 하거나 받고 있는 주위의 조건 또는 사회적 상황이 성평등한 것을 뜻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가. 교육 공간 내의 시설 이용과 배치, 디자인 등의 물리적 환경
  - 나. 교육당사자의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경제적 배경, 대표자 구성 등의 인적 환경
  - 다. 과업을 처리하는 방식, 관행, 주요 원칙 및 조직구조 등의 조직적 환경
  - 라. 교육과정 및 생활교육 등의 제도적 환경
  - 마. 가목부터 라목이 어우러져 형성하는 일상의 문화, 풍토 등의 구성적 환경
4. "교육당사자"란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

2. 제1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학생
3.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4.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제4조(교육감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당사자에게 성평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의 수립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그 운영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성평등 관점에 따른 인권 보호 및 성문화 조성 등 성평등 교육·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평등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추진 방안
2.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수립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3.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계획
4. 성평등 관점의 성차별·성폭력 방지 및 근절 계획
5. 성평등 교육자료 및 연구자료 개발·보급
6. 지역사회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8. 성인지 예산 편성 및 추진 결과 보고
9. 그 밖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성평등위원회)** ①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차별·성폭력 방지 및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3.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평등·교육정책·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 전담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안건 심의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성평등 의식제고 및 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자격연수에 서 성평등 교과목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성평등 관련 직무연수과정이 운영되거나 교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학생 및 보호자 대상으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지원하고,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조직문화 개선 및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성차별·성폭력의 금지 등)** 교육감은 학생과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 생활교육,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평등한 문화 확립
2. 성평등 및 성폭력 사안처리 관련 업무 담당자의 성인지 교육 강화
3. 성차별·성폭력 발생시 불이익한 처분 등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및

피해자의 회복 및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제11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제5조(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6조(성평등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성평등 의식제고 및 문화 조성), 제10조(성차별·성폭력의 금지 등), 제11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같은 조례안 제5조(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6조(성평등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성평등 의식제고 및 문화조성), 제10조(성차별·성폭력의 금지 등)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 추계 대상 아님([붙임] 참고)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332,500천원(연평균 66,5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66,5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따른 비용은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의 세세부사업인 ‘서울형혁신교육지구협의체운영’ 예산을 준용하여 비용 추계
- 물가상승률은 미반영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332,500천원(연평균 66,500천원)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비용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제11조	66,500	66,500	66,500	66,500	66,500	332,500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비용						
소계(b)		66,500	66,500	66,500	66,500	66,500	332,500
□총 비용(b-a)		66,500	66,500	66,500	66,500	66,500	332,500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비용 ≙ 332,5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지역사회협력망구축비용)<sub>i</sub> = 66,5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2020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협의체 운영' 예산 준용

- 대상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중앙실무위원회, 주체별 네트워크 등

- 내용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및 마을 학교의 통합적 교육력 제고

- 소요예산 : 66,500천원

· 운영비		54,000	천원
- 운영위원회참석수당	100,000원 × 30명 × 4회 =	12,000	천원
- 기타운영수당	(40,000+10,000원) × 21명 × 20회 =	21,000	천원
- 민간자문관수당	250,000원 × 7회 × 12월	21,000	천원
· 업무추진비		12,500	천원
- 업무협의회	20,000원 × 25명 × 25회 =	12,50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 석 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

【붙임】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20년 예산	사업내용
제5조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제2항	제2호 학교성희롱·성폭력근절기반 구축및성평등문화조성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교육지원)	20,000	· 대상 및 학교급에 따른 성희 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및 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 다양한 형식의 맞춤형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학교 현장 활용 가능한 성평등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제3호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담당교사직무연수 운영)	25,260	· 학생 참여중심, 협력적 성교육 운영 등 다양한 성교육 교수·학 습방법 제공을 통한 성교육 담당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 신규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다양한 성교육 수업방법 습 득·공유 기회 제공을 통해 성교 육 역량을 강화함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 위 예방을 위해 교직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함
	성인권증진및성평등정책	62,850	학교 성평등교육 강화 연수 -학교 현안에 따른 성평등 주제 별 연수 운영
	제4호 학교성희롱·성폭력근절기반 구축및성평등문화조성	343,000	· '18년 이후 지속 확산되고 있 는 학교 성희롱·성폭력(스쿨미 투) 근절 및 근본적 예방을 위 한 국가적 기반 마련 및 지원 필요 · 대상별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 평등교육 활성화로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 학교 내 성폭력 방지 및 성평등 하고 인권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제5호 학교성희롱·성폭력근절기반 구축및성평등문화조성 (학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20,000	· 대상 및 학교급에 따른 성희 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및 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 다양한 형식의 맞춤형 성평등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20년 예산	사업내용
	교육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학교 현장 활용 가능한 성평등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제9호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맞춤형 성교육)	44,360	학부모 성인식 개선 및 가정 내 에서의 자녀 성교육 지도를 위한 소그룹 토의 토론 맞춤형 성교육 지원
제6조(성평등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운영)	성인권증진및성평등정책 (가칭)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	4,250	(가칭)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 - 기간 : 2020. 3. ~ 12. - 내용 : (가칭)성평등위원회 구 성·운영, 서울시교육정 책 성평등 관점 정책방향 점검 및 체계적 자문 등 - 소요예산 : 4,250천원
제9조(성평등 의식제고 및 문화조성)제1·2·3항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담당교사직무연수 운영)	25,260	·학생 참여중심, 협력적 성교육 운영 등 다양한 성교육 교수·학 습방법 제공을 통한 성교육 담당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신규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다양한 성교육 수업방법 습 득·공유 기회 제공을 통해 성교 육 역량을 강화함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 위 예방을 위해 교직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함
	성인권증진및성평등정책	62,850	학교 성평등교육 강화 연수 -학교 현안에 따른 성평등 주제 별 연수 운영
제9조(성평등 의식제고 및 문화조성)제4·5항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480,339	·스쿨미투 발생교 특별장학·전수 조사·사후처리까지 시민조사관이 참여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 성, 더불어 학교공동체의 안전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책임지도 록 하고자 함 ·스쿨미투 발생학교 학생·교직원· 학부모 대상 회복교육을 실시하 여 학생·교직원간 관계회복을 지 원하여 안정된 학교조성에 노력 하고자 함. 특히, 성비위로 징계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20년 예산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받은 교직원대상으로 재발방지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과 교직원간 성인지 감수성 간극을 좁힌 상태에서 복교시키고자 함</li> <li>· 학생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방법 홍보자료 개발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li> </ul>
제10조(성차별·성폭력의 금지 등)	제1호	34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별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교육 활성화로 안전하고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li> <li>· 학교 내 성폭력 방지 및 성평등하고 인권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li> </ul>
	제2호	30,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2020. 6. ~ 8.</li> <li>·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성고충상담원 1,300명</li> <li>· 내용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 전문성 확보 및 상담관리 핵심역량 강화</li> <li>· 성교육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 구축·운영을 통해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및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확보</li> </ul>
	제3호	17,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100교, 학교 및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관련인(행위자, 피해자)</li> <li>-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 지원을 위한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인력풀 구축 및 운영</li> <li>· 관리자(교장, 교감, 기관장 등) 혹은 다수 교직원에게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 등에 대한 조사 및 심의</li> </ul> </li> </ul>